

보험약관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목 차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보험나이 등)

제23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29조2(위법계약의 해지)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소멸시효)

제36조(약관의 해석)

제3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개인정보보호)

제40조(준거법)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휴일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I)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II)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일상생활 폭력상해보상 특별약관
 일상생활 폭력상해보상 특별약관(연간 ()회한)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사망 특별약관
 질병 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암치료비 특별약관(I)
 암치료비 특별약관(II)
 암치료비 특별약관(III)
 암치료비 특별약관(IV)
 암수술 특별약관(I)
 암수술 특별약관(II)
 암입원일당 특별약관(I)
 암입원일당 특별약관(II)
 과로사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벌금(대인,실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벌금(대인,실손,어린이보호구역사고)(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벌금(대인,실손) 특별약관II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실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 I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II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III(경찰조사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실손,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실손,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동승자 제외)
 실업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II)
 실업 특별약관(III)
 실업 특별약관(IV)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공기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전세버스 상해보장 추가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부상(1-10급, 등급별)치료비 특별약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특별약관

질병휴학 특별약관

강력범죄 특별약관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식중독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식중독 특별약관용)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소아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소아3대암 및 제자리암 진단비 특별약관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화상수술비 특별약관용)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현역군인상해물리치료비(50%) 추가특별약관

- 현역군인상해재활치료비(80%) 추가특별약관

- 현역군인상해중증장해(100%) 추가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학생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실손)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실손)

야간노상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ATM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학생 폭력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I)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II)
 자전거 배상책임 특별약관
 자전거 손해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 자전거 비탐승중 사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벌금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II
 PM(공유용 제외)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공유용)사고 벌금 특별약관
 PM(공유용)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PM(공유용)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PM(공유용) 배상책임 특별약관
 PM(공유용) 사고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 사고비용 특별약관II
 PM(공유용)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운전자용)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화상진단비 특별약관용)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약관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공기 1회 탑승당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 특별약관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질병입원비용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확장보상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확장보상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1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4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폭력피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의사상자(1~9급)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 입원의료비 초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특수운전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성장판손상유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수술비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비운전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용)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용)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약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물놀이사고 사망 특별약관
 유독성물질 사망 특별약관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갑스치료비 특별약관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독감 및 폐렴 사망 특별약관
 1~5종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5종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결핵 진단비 특별약관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특별약관
 유산진단비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특별약관
 상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질병 응급실 내원 진료비(응급환자) 특별약관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자녀실종 특별약관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실손) 특별약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장례지원금(실손) 특별약관
 모성특정질병사망 특별약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유산 진단비 특별약관(임산부용)
 유산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유산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유산 수술비 특별약관
 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수술비 특별약관
 임신중독증 진단비 특별약관
 임신중독증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임신중독증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중독증 수술비 특별약관
 태반조기분리 진단비 특별약관
 태반조기분리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태반조기분리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27주이내 조산 보장 특별약관
 다운증후군 출산 진단비 특별약관
 여성산과 관련 자궁적출수술비 특별약관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저체중아 출산보장 특별약관
 저체중아 입원일당(3~60일) 특별약관
 선천이상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선천이상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선천이상 수술비 특별약관
 선천이상 수술비(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고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고비용 특별약관Ⅱ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대상포진 진단비 특별약관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비(정액)(Ⅱ)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비(정액)(Ⅲ)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정액)(Ⅰ)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정액)(Ⅱ)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정액)(Ⅲ) 특별약관
 크라운보존치료비(Ⅰ) 특별약관
 크라운보존치료비(Ⅱ) 특별약관
 크라운보존치료비(Ⅲ) 특별약관
 X-ray 치아촬영비(1회) 특별약관
 파노라마 치아촬영비(1회) 특별약관
 -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
 -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Ⅲ

단체취급 특별약관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교통상해보장제외 특별약관

[별표]

【별표1】장해분류표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5】과로사관련 질병 분류표

【별표6】3대암 분류표

【별표7】여성특정암 분류표

【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9】식중독 분류표

【별표10】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별표11】골절 분류표

【별표12】소아3대암 분류표

【별표13】특정전염병 분류표

【별표14】화상 분류표

【별표15】충수염(맹장염) 분류표

【별표16】탈구,신경손상,압박손상 분류표

【별표17】외상성절단 분류표

【별표18】뇌·내장손상 분류표

【별표19】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별표20】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별표21】수술 분류표

【별표2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별표23】의상자 부상등급표

【별표24】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별표25】아나필락시스 쇼크 분류표

【별표26】독감 및 폐렴 분류표

【별표27】골절(1~5종) 분류표

【별표28】골절(1~5종, 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별표29】결핵 분류표

【별표30】만성 신장병 분류표
【별표31】유산 분류표
【별표32】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별표33】임신·출산관련 질환 분류표
【별표34】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분류표
【별표35】임신중독증 분류표
【별표36】태반조기분리 분류표
【별표37】다운증후군 분류표
【별표38】자궁적출 및 수술 분류표
【별표39】주산기질환 분류표
【별표40】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별표41】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분류표
【별표4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별표43】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별표44】「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별표45】「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
【별표46】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분류표
【별표47】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분류표
【별표48】뇌졸중 분류표
【별표4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별표50】대상포진 분류표
【별표51】대상포진눈병 분류표
【별표52】X-ray 촬영 및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별표53】파노라마 촬영 및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참고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가나다 순 색인]

(ㄱ)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강력범죄 특별약관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결핵 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과로사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실손,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동승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실손,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동승자 포함)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비용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교통상해보장제외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ㄷ)

다운증후군 출산 진단비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특별약관

대상포진 진단비 특별약관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부상(1-10급, 등급별)치료비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독감 및 폐렴 사망 특별약관

(ㄹ)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ㄴ)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특별약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약관
모성특정질병사망 특별약관
물놀이사고 사망 특별약관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민사소송법률비용 특별약관(실손)

(ㄴ)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ㄷ)

상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Ⅲ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실손) 특별약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장례지원금(실손)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확장보상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확장보상 특별약관Ⅱ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선천이상 수술비 특별약관
선천이상 수술비(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특별약관
선천이상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선천이상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소아3대암 및 제자리암 진단비 특별약관
소아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용)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용)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식중독 특별약관용)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화상수술비 특별약관용)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화상진단비 특별약관용)

수술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성장판손상유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식중독 특별약관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Ⅱ)

실업 특별약관(Ⅲ)

실업 특별약관(Ⅳ)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ㅇ)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특별약관

암수술 특별약관(Ⅰ)

암수술 특별약관(Ⅱ)

암입원일당 특별약관(Ⅰ)

암입원일당 특별약관(Ⅱ)

암치료비 특별약관(Ⅰ)

암치료비 특별약관(Ⅱ)

암치료비 특별약관(Ⅲ)

암치료비 특별약관(Ⅳ)

야간노상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여성산과 관련 자궁적출수술비 특별약관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유독성물질 사망 특별약관

유산 수술비 특별약관

유산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유산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유산 진단비 특별약관(임산부용)
유산진단비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실손)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약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일상생활 폭력상해보상 특별약관
일상생활 폭력상해보상 특별약관(연간 ()회한)
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수술비 특별약관
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관련 고혈압·당뇨병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27주이내 조산 보장 특별약관
임신중독증 수술비 특별약관
임신중독증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임신중독증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임신중독증 진단비 특별약관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ㄱ)
자녀실종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고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고비용 특별약관Ⅱ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실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벌금(대인,실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벌금(대인,실손) 특별약관Ⅱ
자동차사고 벌금(대인,실손,어린이보호구역사고)(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Ⅰ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Ⅱ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Ⅲ(경찰조사포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비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1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4일이상 45일한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의사상자(1~9급)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폭력피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자전거 배상책임 특별약관
 자전거 비탑승중 사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자전거 손해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Ⅰ)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저체중아 입원일당(3~60일) 특별약관
 저체중아 출산보장 특별약관
 전세버스 상해보장 추가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질병 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 응급실 내원 진료비(응급환자) 특별약관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사망 특별약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질병입원비용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
 질병휴학 특별약관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특별약관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 특별약관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정액)(Ⅰ)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정액)(Ⅱ) 특별약관
치아보존치료비(정액)(Ⅲ)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비(정액)(Ⅱ)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비(정액)(Ⅲ) 특별약관

(㉠)

크라운보존치료비(Ⅰ) 특별약관
크라운보존치료비(Ⅱ) 특별약관
크라운보존치료비(Ⅲ) 특별약관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태반조기분리 입원일당 특별약관(1일이상120일한도)
태반조기분리 입원일당 특별약관(4일이상120일한도)
태반조기분리 진단비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

파노라마 치아촬영비(1회) 특별약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Ⅰ)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Ⅱ)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학생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
학생 폭력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항공기 1회 탑승당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공기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현역군인상해물리치료비(50%) 추가특별약관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현역군인상해재활치료비(80%) 추가특별약관
현역군인상해중증장해(100%) 추가특별약관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휴일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기타)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1~5종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5종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ATM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Ⅱ

PM(공유용 제외)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벌금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 배상책임 특별약관

PM(공유용)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PM(공유용) 사고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 사고비용 특별약관Ⅱ

PM(공유용)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PM(공유용)사고 벌금 특별약관

PM(공유용)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공유용)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X-ray 치아촬영비(1회) 특별약관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3. 계약취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는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6.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이외 보험용어에 대한 해설은 각 조항별 <용어 풀이> 혹은 용어의 정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애: 「장애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용어
풀이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보장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일부 보장내용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예시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용어
풀이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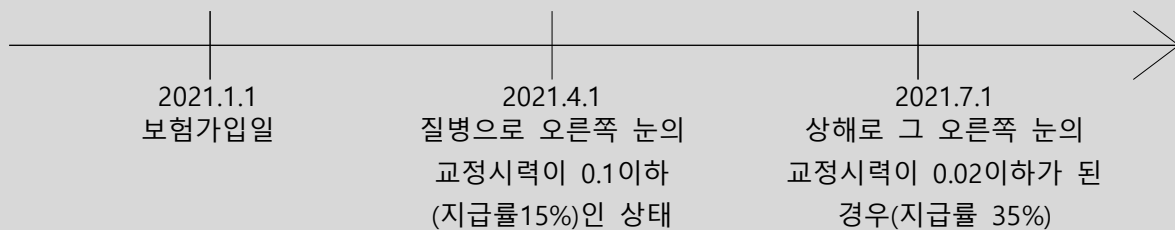
【보험금 지급 예시】

①



→ 상해로 인한 장애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애지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②



→ 장애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애지급률 15%를 뺀 20%(=35%-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용어
풀이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관련
지식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는 예시】

예시

(가정)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100만원을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월평균 정기예금이율 5%)

- 2020년 1월 1일 지급액 = 50만원

- 2021년 1월 1일 지급액 = 50만원 × 1.05 = 52.5만원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예시】

(가정)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할 보험금을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월평균 정기예금이율 5%)

-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 50만원 + $\frac{50\text{만원}}{1.05} = 97.62\text{만원}$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용어
풀이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
풀이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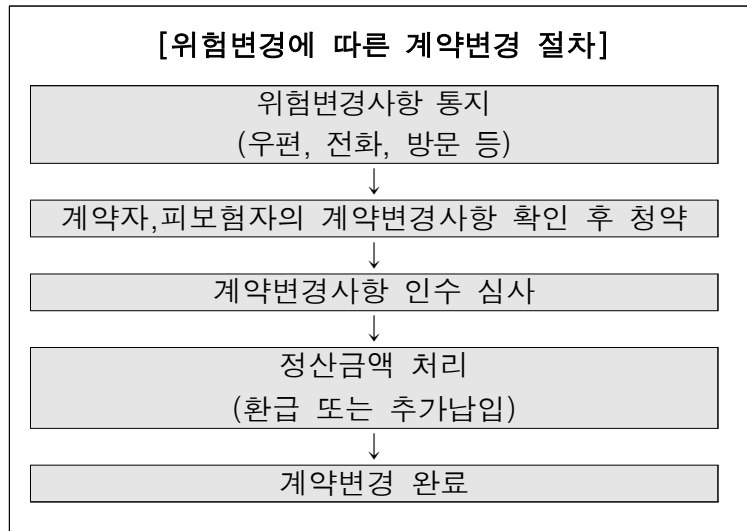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가정】

예시

상해사망 보험지급 대상금액 = 300만원

변경전 위험에 대한 보험료(요율) = 100원

변경후 위험에 대한 보험료(요율) = 150원

⇒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미납한 후 상해 사망시 지급보험금
 = 300만원 × (100원 / 150원) = 200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지식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용어
풀이**【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내용, 위험보장범위, 보험료 및 보험금
- 위험보장의 기간,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연계 및 제휴된 서비스 관련 내용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해당 내용은 법령상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용어
풀이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용어
풀이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용어
풀이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예시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유의
사항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 보험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
풀이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풀이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지식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는 예시】

(가정) 2020년 1월 1일 일시에 지급할 보험금 100만원을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각각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월평균 정기예금이율 5%)

- 2020년 1월 1일 지급액 = 50만원

- 2021년 1월 1일 지급액 = 50만원 × 1.05 = 52.5만원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용어
풀이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

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용어
풀이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금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용어
풀이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용어
풀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
지식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식중독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10】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1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진단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별표16】참조)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시에는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교통수단】

용어
풀이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입원】

용어
풀이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제1항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 ③ 위 제2항에서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별표21】참조)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소라 함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별표9】식중독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1. 1. 1. 시행)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식중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감염	A02
2. 시겔라증	A03
3. 기타 세균성 장감염	A0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5
5. 아메바증	A06
6. 기타 원충성 장질환	A07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08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1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식중독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1. 1. 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S02(S02.5 제외)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4】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1. 1. 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6】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코드
경추의 탈구	S13.1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S13.2
목의 다발탈구	S13.3
흉추의 탈구	S23.1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S23.2
요추의 탈구	S33.1
천장관절 및 천미관절의 탈구	S33.2
어깨관절의 탈구	S43.0
견쇄관절의 탈구	S43.1
흉쇄관절의 탈구	S43.2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S43.3
요골머리의 탈구	S53.0
팔꿈치의 상세불명 탈구	S53.1
손목의 탈구	S63.0
손가락의 다발탈구	S63.2
고관절의 탈구	S73.0
무릎뼈의 탈구	S83.0
무릎의 탈구	S83.1
발목관절의 탈구	S93.0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S93.3
뇌신경의 손상	S0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4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4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4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4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을 동반한 뇌 및 뇌신경의 손상	T06.0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손상	T06.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의 손상	T06.2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수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T09.4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T11.3

분 류 항 목	분류코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T13.3
목의 으깬손상	S17
어깨 및 위팔의 으깬손상	S47
아래팔의 으깬손상	S57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깬손상	S77
아래다리의 으깬손상	S87
발목 및 발의 으깬손상	S97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깬손상	T04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21】수술 분류표

수 술 종 류	
피부.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	1. 피부이식수술(植皮術) (25cm ²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근골의 수술 (筋骨의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코뼈)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코뼈)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악관절 관혈수술(위턱뼈, 아래턱뼈, 顎關節 觀血手術)[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肋骨胸骨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팔.다리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팔.다리再接合術) [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팔다리뼈) 사지관절 관혈수술 (팔.다리骨 팔.다리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3. 근.건(힘줄).인대.관혈수술(筋建 靱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筋炎 結切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호흡기.흉부의 수술 (呼吸器.가슴의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절제술(喉頭全切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순환기.비의수술 (循環器.脾의 手術)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의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精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精脈 肺動脈 冠動脈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藏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절제술(脾切除術)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귀밑샘)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腸 膽囊 膽道 胰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항문탈출증) 치핵근본수술(痔屢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手術)	38. 콩팥(신장)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노관 방광 관혈수술(콩팥 腎盂 尿管 膀胱 觀血手術) [경요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요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屢閉鎖觀血手術) [경요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睪丸 副睪丸 精管 精囊 精囊 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근본수술(陰囊手腫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절제술(子宮廣汎全切除術) [단순 자궁 전 절제술(單純子宮全摘)등의 자궁전절제술(子宮全切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 중절술 (子宮經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腔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53. 하수체종양절제술(下垂體腫瘍切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절제술(副腎全切除術)
신경의 수술 (神經의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척수증양적출수술(觀血의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감각기.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눈꺼풀이 느리짐症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觀血의前房 紅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紅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 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72. 안구절제술 조직충전술(眼球切除術,組織充填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手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감각기.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의 手術)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의鼓膜 鼓室型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가운데귀)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8. 내이(속귀)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악성신생물(암)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암)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암)온열요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암)수술(惡性新生物手術)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の 手術)	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후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の 手術)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 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腦喉頭 가슴 배藏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고】

-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 검사(生檢, 腹腔鏡檢査)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